

박람회로 알려진 발명

발명자와 특허출원에 대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이미 발명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경우가 가끔 있다.

발명자가 특허출원을 하려면 발명을 비밀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특허출원까지 생각하지 않고 발명을 타인에게 발설하거나 간행물에 발표한 경우가 가장 흔하다.

또 발명의 상업화를 위한 투자자 물색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발명을 설명한 경우나 발명을 완성하기 위한 시험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경우도 있고 드물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발명내용을 몰래 빼내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특허를 받으려면 신규성이 있어야 하는데,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란 특허출원 전에 발명의 내용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발명을 말한다.

여기서 일반 대중이란 발명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없는 사람으로서 그 수의 많고 적음은 발명의 신규성과 무관하다.

즉, 발명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도 그들 모두가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면 그 발명은 신규성이 있는 것인 반면, 단 한 사람에게만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비밀 유지의 의무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위의 예들에서 특허출원 전에 발명의 내용을 알게 된 사람들이 비밀유지의 의무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게 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특허법은 비록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비밀유지의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특허제도의 목적인 산업발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일정한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신규성 의제라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발명자가 발명을 시험하거나, 간행물에 발표하거나, 학술단체에서 발표하거나 또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발명이 공지되는 경우에는 공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2001. 7. 1. 시행예정인 개정 특허법에서는 이들 사유이외에 발명의 내용이 인터넷에 게시된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발명을 빼내 출원한 경우에는 이를 모인출원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발명자가 특허청에 그 사실을 입증하면 모인출원의 출원일에 자신이 출원한 것으로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비밀유지의 의무에 대한 해석이나 신규성 의제에 관한 사실은 간단하지 않으므로 공지된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매일경제

특허·실용신안은 '신기술' 보호

제품 포장이나 카탈로그 신문광고 등을 보면, "의장특허출원 제1999-12345호 출원 중" 또는 "실용신안특허 등록번호 제2000-3456호" 라고 인쇄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얼핏보면 그럴 듯 하지만 정확한 표기는 아니다.

우선 의장특허라는 게 없다. 의장이면 의장이고 특허면 특허지 의장특허란 것은 없다. 실용신안특허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인들의 잘못을 탓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일반인은 특허라는 명칭으로 산업재산권 전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산업재산권 4대 권리인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의 차이는 뭘까.

특허(Patent)와 실용신안(Utility Model)은 "기술적 사상"이 보호 대상이다.

의장(Design)은 "물체의 외관" 즉 디자인에 관한 것이다. 상표(Trademark)는 "문자나 로고" 같은 것을 보호한다.

상품에 사용되는 것이면 상표(Trademark)라 부르고, 서비스에 사용되는 것이면 서비스표(Service mark)라고 부른다.

의장이나 상표에서는 기술은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마우스를 생각해

보자. 바닥에 장착된 동그란 공이 구르면서 포인터의 위치를 움직이는 볼마우스만 있던 시절에 누군가가 볼을 없앤 광마우스를 개발했다.

이 정도라면 훌륭한 신기술로서 특허가이다.

한편 마우스 버튼의 클릭 감각을 좋게 하기 위해 간단한 완충재를 고안했다.

이런 것은 실용신안감이다.

어린이용 마우스로 미키마우스 얼굴 형상을 한 마우스를 생각해 냈다면 이것은 모양에만 관계되므로 의장감이다.

마우스 표면에 인쇄되어 있는 "OpticalTouch"와 같은 문자는 상표이다.

이번에는 범위를 더 좁혀 특허와 실용신안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좀 더 깊이 알아 보자. 특허와 실용신안은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는 면에서는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 둘 중 어느 것으로 출원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손쉬운 구별 방법으로는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원천핵심기술은 특허로 출원하면 되고 비교적 간단하고 주변개량 기술이며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기술은 실용신안의 대상이라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그 경계선은 뚜렷하지 않아 어느 정도 중복되기도 한다.

미국은 실용신안 제도를 따로 두지 않고 특허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특허는 물건이나 방법이 모두 대상이지만 실용신안은 물건만이 대상이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나 소프트웨어 발명은 아무리 간단해도 실용신안으로는 안되고 특허로 출원해야 한다.

물건 발명인 경우에는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가능하다.

하나의 아이디어로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출원하는 이중출원이 가능하다.

특허는 권리의 기간이 출원 후 20년이지만, 실용신안은 10년이다.

또 특허는 등록을 받으려면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실용신안은 간단한 형식심사를 제외하고는 출원하면 내용에 대한 심사없이 곧바로 등록증이 발부된다.

출처 한국경제

발특2001/7

전자 종이 실용화 눈앞

종이처럼 유연성이 있으면서 전기적인 신호를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됨으로써 전자 종이(Electronic paper)의 출현이 보다 가까워졌다.

이것은 수백 개의 픽셀로 구성되지만 고품질의 디스플레이가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다고 이것을 발명한 사람은 주장했다. 전자종이는 얇은 종이와 같은 느낌과 모습,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자 문서를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무선 기술을 사용해서 다운로드된 전자정보와 책이나 신문의 형태를 결합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벨연구소의 존 로저가 이끈 미국의 E 잉크사와 벨연구소의 연구진은 단순한

단어와 그림을 보여줄 수 있으면서 손으로도 구부릴 수 있는 것을 개발했다. 이것은 작은 건전지로도 몇 개월을 작동할 수 있다고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지에 실린 논문에서 밝혀졌다.

이 새로운 발명의 뛰어난 점은 micro-contact 인쇄하고 불리는 매우 간단한 제조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고무 스탬핑과 비슷하며 따라서 전자 장비 생산에 필요한 고가의 현대식 클린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전자 잉크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고무 스탬핑 기법을 이용한 최초의 것이라고 존 로저스는 설명했다.

디스플레이 구성요소들은 1밀리미터

두께도 안 되는 얇고 유연성이 있는 플라스틱에 찍힌다. 연구진은 자신들의 기술이 전자 종이에 필요한 크기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기술이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개발이 좀 더 필요하지만 이들은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존 로저스는 "실제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50 마이크로 정도인데 비해 우리 것은 수백 마이크로 정도로 현재 랩탑에 쓰이는 크기에 많이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러한 종류의 디스플레이에 글을 쓸 수는 없지만 앞으로 개발되는 것에는 글을 쓰지 못할 이유가 없다.